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위성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118

발의연월일: 2025. 2. 13.

발 의 자:위성곤・박지원・김윤덕

허 영・주철현・서영교

이춘석 · 강유정 · 문대림

박희승 · 김한규 · 이원택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섬 주민 소유차량, 화물차량 등을 선적하여 섬 지역을 출입하는 경우 이용객들에게 도선료와 함께 자동화물비를 부과하고 있음. 매년 평균 270만대의 차량이 선박을 통해 섬 지역으로 운송되고, 지자체에서는 해상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해 섬 주민 소유차량에 대해 도선료, 자동화물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.

그러나 선박에 차량을 싣고 내리는 하역서비스 제공 대가인 자동화물비는 부과 근거가 불분명하여 하역사업자와 섬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불편·부담이 가중되고 있음.

특히 섬 주민 및 택배 차량 등에 대한 자동화물비 부과로 생활필수품, 농·수산물 등에 대한 생활물류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.

이에 항만하역요금 인가 시 이해관계자인 섬 주민 등 이용자를 의

견수렴 협의체의 참여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항만하역요금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(안 제10조).

법률 제 호

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6항 중 "부두운영회사 등"을 "부두운영회사, 도서지역 주민협 의체 및 이용자 단체 등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운임 및 요금) ① ~ ⑤	제10조(운임 및 요금) ① ~ ⑤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⑥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인	6
가에 필요한 경우 표준운임 산	
출 및 표준요금의 산정을 위하	
여 선박운항업자, <u>부두운영회사</u>	<u></u> 부두운영회사 <u>,</u>
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	도서지역 주민협의체 및 이용
협의체를 구성・운영할 수 있	<u>자 단체 등</u>
다.	
⑦ (생 략)	⑦ (현행과 같음)